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51014		
최초 등록일	2015.10.21	최종 등록일	2023.12.06



르번미 (Lebunmie)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세지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세지푸드

대표번호	1 5 2 2 - 2 2 0 5	팩스번호	0 2 - 2 6 3 5 - 3 4 1 7
가맹사업부서	가맹사업부 영업팀	전화번호	0 2 - 2 6 3 3 - 9 1 3 6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9가길 2, 3층 (문래동 6가)
-----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내·외국 기업 여부
4. 인수·합병 여부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6. 가맹본부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8.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의 연혁
3.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5. 기타 가맹사업현황
6.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7.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8. 직전사업연도의 광고·판촉지출 내역
9. 가맹금예치기관
10.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8.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 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등
4. 신용제공 등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준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정 보 공 개 사 항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주식회사세지푸드의 “르번미(Lebunmie)”) 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르번미(Lebunmie)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형태	법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110111-5752385
사업자등록일	2015.06.25	법인설립일	2015.06.15
사업자등록번호	175-87-00080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 호		대 표 자	대 표 번 호
가 맹 본 부	(주)	세 지 푸 드	김 상 춘	1 5 2 2 - 2 2 0 5
특 수 관 계 인 (임 원)	사내이사 김상애	영업표지	주소	
		르번미 (Lebunmie) (1 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9 가길 2, 3 층 (문 래 동 6 가)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나 회사를 말합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당사는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르번미(Lebunmie)]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가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브랜드명	상호	서비스표, BI 등
르번미 (Lebunmie)	르번미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5.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서

- 1)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361,946	592,907	-230,961	667,462	44,717	44,651
2022 년	392,568	602,134	-209,566	743,878	5,960	21,395
2023 년	408,953	613,811	-204,858	719,535	14,220	4,708

- 2)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가 르번미(Lebunmie) 가맹사업 외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직위	개인별 사업경력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상춘	대표이사	2015.06.25~현재	르번미(Lebunmie) 가맹사업	경영전반
	유승철	사내이사	2015.06.25~2018.06.15	-	퇴임
	권영옥	감사	2018.02.28~2021.03.31	-	임기만료
	김상애	사내이사	2018.06.15~현재	르번미(Lebunmie) 가맹사업	경영전반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12.31	2	-	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르번미(Lebunmie)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르번미(Lebunmie)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건본이미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만료일
서비스표		<u>2016. 03.15.</u>	제 41-0352517 호	김상춘	2026.03. 14
서비스표		<u>2016. 03.16</u>	제 41-0352518 호	김상춘	2026. 03.14
권리범위	가맹점 상호 및 광고로 사용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르번미(Lebunmie) 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15 년 06 월 15 일입니다.

2. 르번미(Lebunmie) 의 연혁

르번미(Lebunmie)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세유프드	르번미 (Lebunmie)	김상춘	2015.06.15 ~ 2015.12.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9 길 4 (문래동 6 가)
(주)세지에프엔에스	르번미 (Lebunmie)	김상춘	2015.12.14 ~ 2016.01.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9 길 4 (문래동 6 가)
(주)세지푸드	르번미 (Lebunmie)	김상춘	2016.01.29 ~ 2019.1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9 길 4 (문래동 6 가)
(주)세지푸드	르번미 (Lebunmie)	김상춘	2019.12.26 ~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9 가길 2 (문래동 6 가)

☞ 2020 년도 (주)세유프드에서 (주)세지에프엔에스, 다시 (주)세지푸드로 가맹본부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 2021 년도 (주)세지푸드의 도로명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3. 르번미(Lebunmie) 업종

영업표지	업종	
르번미 (Lebunmie)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쌀국수

4. 최근 3 개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르번미(Lebunmie) 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개)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2	12	-	11	11	-	8	8	-
서울	5	5	-	3	3	-	2	2	-
인천	-	-	-	-	-	-	-	-	-
부산	2	2	-	2	2	-	2	2	-
대구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3	3	-	4	4	-	2	2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1	1	-	1	1	-	1	1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1	1	-	1	1	-	1	1	-
제주	-	-	-	-	-	-	-	-	-
세종	-	-	-	-	-	-	-	-	-

5. 최근 3 개 사업연도말 르번미(Lebunmie)의 가맹점 수

시 점	연 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 말
2021 년	14	2	4	0	1	12
2022 년	12	1	2	0	1	11
2023 년	11	0	3	0	0	8

6. 르번미(Lebunmie)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르번미(Lebunmie)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VAT 미포함)

당사의 르번미(Lebunmie)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사업연도(2023)에 연간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지역 가맹점수 5 개 미만 또는 영업일수가 6 개월 미만 가맹점은 평균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역	2023 년말 가맹점수	2023년 연간 매출액(단위:천원, VAT미포함)						비고
		연간 평균		연간 평균 (상한)		연간 평균 (하한)		
		평균	3.3 m ² 당	상한	3.3 m ² 당	하한	3.3 m ² 당	
전체	8	430,262	118,322	725,856	199,610	268,184	40,228	-
서울	2	해당 없음						5 곳 미만
인천	-	해당 없음						-
부산	2	해당 없음						5 곳 미만
대구	-	해당 없음						-
광주	-	해당 없음						-
대전	-	해당 없음						-
울산	-	해당 없음						-
경기	2	해당 없음						5 곳 미만
강원	-	해당 없음						-
충북	-	해당 없음						-
충남	1	해당 없음						5 곳 미만
전북	-	해당 없음						-
전남	-	해당 없음						-
경북	-	해당 없음						-
경남	1	해당 없음						5 곳 미만
제주	-	해당 없음						-
세종	-	해당 없음						-

8. [르번미 Lebummie]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르번미(Lebummie)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8	1,521(약 4.1 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르번미(Lebummie)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르번미(Lebunmie)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동광고·판촉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GS 타워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 타워	02-508-5353

☞상기 예치기관의 예치서류 및 절차는 예치기관의 정책 및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예치 전 반드시 당사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고
신한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매장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멀티채널부)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인터넷뱅킹(www.shinhan.com) 접속 → ③ (금융과 서비스)클릭 → ④ (가맹금예치제)클릭 → ⑤ (가맹점사업자 서비스페이지 바로 가기)클릭 → ⑥ 가맹금예치신청서 내용 기입 후 예치가맹금 이체	
신한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신한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개인인감 증명서 ⑤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신한은행에서는 가맹금예치에 관한 업무를 매장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신한은행 계좌가 있으신 사업자는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금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라.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별도로 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르번미(Lebunmie)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의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 2.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대가	<u>11,000,000</u>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오픈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교육인원 추가 시)	<u>3,300,000</u> (4 인기준)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오픈 지원비	개점지원 인력비용	<u>2,200,000</u>	오픈지원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오픈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	------	----------------

양수 가맹비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가맹점 운영매뉴얼 제공	<u>5,500,000</u>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 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교육인원 추가 시)	<u>3,300,000</u>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 요되는 소멸성 비용

3)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2,000,000	계약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 과하는 경우

4)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원/VAT 포함)	
합계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18,500,000	13,000,000
가맹비	11,000,000	5,500,000
교육비	3,300,000	3,300,000
오픈 지원비	2,200,000	2,200,000
보증금(VAT 해당없음)	2,000,000	2,000,000

5)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르번미(Lebunmie)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50m² 이하기준/단위:천원/VAT 포함)

품목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당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인테리어	V-1 의 거래상대방	49,500	3,300	계약 시 개별 협의	설치 전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간판 및 사인물		7,700	510		설치 전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주방기기 및 집기		22,000	1,470		미제공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POS		임대			미제공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초도물품		없음	없음		미제공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합 계		79,200,000원 (면적 3.3㎡당 5,280,000원)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감리 및 검수비:3.3㎡당 220,000(VAT포함)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인테리어 비용은 50m² 기준이며,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 3.3m² 당 2,750,000 원을 추가로 부담하며, 초도물품에 각종 주류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상기 간판 및 사인물 비용은 간판의 크기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④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⑤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6)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	-----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50%

7)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르번미(Lebunmie)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8)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 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개점 전 교육과정 이수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20 세 이상일 것

9)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 각 품목의 공급방법은 계약 체결 시에 개별적 계약으로 체결합니다.

10)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금액(단위:원/VAT 포함)		지급시기
예치가맹금(계약금)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계약 체결 시
	18,500,000	13,000,000 (일시불)	
중도금	기타 대금의 70%		인테리어 시작 시
잔금	기타 대금의 30%		초도물품 입고 시

☞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 1)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지급 대상자	금액(단위:원/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가맹 본부	<u>매출액의 1%</u>	매월 25 일	후불제로 반환 대상 아님
개점	수시 교육	가맹 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이후 교육비	특별 교육	가맹 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 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판촉	가맹 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부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 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POS 사용료	시스템사용료	가맹 본부	-		후불로 반환 안됨
점포 개선비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 개선 비용	가맹 본부	총 개선비용은 협의하여 결정(당사가 지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여개선 비용을 산정)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고)	개별 청구	실비로 점포개선 후 반환되지 않음

귀하는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 의무를 위반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에게 미지급 금액의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3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요구,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는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 · 재고관리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 등'이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와 협의를 통하여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 점포 이전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르번미(Lebunmie)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르번미(Lebunmie)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2)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가맹본부의 대표자 명의로 발행한 통장 및 법인도장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가맹본부와 합의한 경우 상황에 따라 상호, 간판, 등의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가맹사업자가 부담한다.
- 4) 또한 가맹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가맹본부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르번미(Lebunmie)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원 · 부재료) 본사는 식품생산 및 축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품목을 직접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 ①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요구/권유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②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르번미(Lebunmie)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르번미(Lebunmie)직영점 및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필수품목을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가. 판매장려금 내역

(단위:천원/VAT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르번미(Lebunmie)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당사가 제공한 레시피에 의하여 조리된 메뉴 품목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1 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 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시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또는 용역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메뉴제공)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따라 르번미(Lebunmie)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가맹계약서 제 6 조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및 당사의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일 업종이란 V-7.의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을 말합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등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V-7.에서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		해당 없음
---------	---	-------

☞ 영업지역 보호 제도는 당사가 르번미(Lebunmie)와 사업형태가 동일한 업종 외의 다른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에, 그 다른 브랜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의 기준점(가맹점의 중앙점)으로부터 반경 500M (다만, 특수상권인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별도의 영업지역을 설정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

3) 영업지역의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의 현저한 변동 등) 또는 이에 준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임직원)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하고 협의 후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100%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르번미(Lebunmie)의 가맹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입니다. 갱신 시에는 1 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 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으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계약 갱신에 따른 갱신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7조 2항 각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2항 및3항	25조 각호 및 31조 1항 1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조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4항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15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이 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7조1항 및2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0조1항	
가맹점사업자가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1조2항 ~4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조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조9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 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27조2항 및3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조6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0조2항 ~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0조7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조1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	25조21호	

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조1항2호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31조 4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A.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B.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C.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4)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5)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 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①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营业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르번미(Lebunmie)와 동종업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르번미(Lebunmie)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베트남요리 및 이를 활용한 퓨전 음식류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르번미(Lebunmie)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가맹점 개별 상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운영 (고객의 편의 및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하여)	연중 무휴

일관성 있는 영업시간을 유지할 것)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일수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적절한 매출 및 고객서비스 확보를 위해 최소 4명 (점주 포함)의 근무 필요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 (주)세지푸드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	-------	------	------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50% / 가 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 →가맹점부담 액 통지(광고1개월 전)→ 통지받은 날 로부터 2주일 내 납입
	상품광고 등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제시→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 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교육과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

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등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7 조(비밀유지 의무), 제 18 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33조 제1항
귀하가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항
귀하가 제 31 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해지·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오백만원(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항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 일 금삼십만원 (300,000 원)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 제4항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5항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귀하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귀하의 영업기간 동안 당사에 지불한 직전 3 개월간 월평균 물품대금의 5% 금액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불하며 이는 제 33 조의 위약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 제7항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37조 제1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6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 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1522-2205), 또는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중 1.영업개시 이전 부담금전지급 방법 참조
1 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상담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14(7)일 이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 체결 1 일 전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1 일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3 일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3~4 일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20 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기자재 및 소품 설치	3 일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6 일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오픈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 - 오픈 행사(담당자 판단)	D-day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르번미(Lebunmie)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의 부담 항목	가맹본부의 부담 항목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기타 비용은 협의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 절차	간판교체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함)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등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슈퍼바이저, 지역관리자, 배송담당자 등을 파견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맹점의 경영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의 범위
1. 계약이행(Contract):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브랜드 명성 유지 여부 확인 2. 표준화(Standardization):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의 유지 및 각 메뉴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해설 및 지도 3. 시장조사(Market Research): 가맹점의 특성 및 시장변화 분석 방법에 대한 지도 4. 판촉(Sales Promotion): 신규 고객 창출 및 판매 촉진활동 지도 5.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귀하는 당사의 효과적인 경영지도를 위하여 당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지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하는 상기 경영지도의 범위에 의한 경영상의 정당한 규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당사에게 귀하 자신의 점포에 대한 특별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귀하로부터 특별 경영지도 요청을 받은 당사는 경영지도 계획서를 귀하에게 제시할 수 있고 경영지도 결과 및 개선방안을 귀하에게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창업대출은 하고 않으나 귀하가 원하는 경우 다양한 창업자금 대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등)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①	주요내용 ^②	지원조건 ^③	지원기간	지원내용 ^④	비고 ^⑤
해당없음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를 작성하되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고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조정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지원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③ 지원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 ④ 지원내용이 정액금액인 경우 그 금액을, 정률금액인 경우 그 기준을 기재하되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치임을 알 수 있도록 상한선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원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⑤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가맹본부가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으로 기재합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르번미(Lebunmie)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르번미(Lebunmie)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VAT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6일 (30시간)	3,300,000 (기본:4명, 추가1인당 550,0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개별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 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총 1 인)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없음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단위 : 년, 개월)

2022 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2 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합니다. 매출액 산정근거 자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10%)은 제외하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연 및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③ 연간 평균 매출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였는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 개월 이상이면 1 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시고, 직영점의 영업 개월수가 6 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끝

별첨1 초도물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품목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의 사업전략 변경 등으로 인한 메뉴변경 및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의 물류배송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되거나 품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가맹본부 보관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세지푸드』의 『르번미(Lebunmie)』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아래사항을 보고 동일하게 '자필'로 기재 바랍니다.

『(주)세지푸드』의 『르번미(Lebunmie)』 가맹계약에 앞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년 월 일	
	정보공개서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정보공개서 제공장소:		
	정보공개서 제공자:	서명(또는 기명날인)	
	정보공개서 수령자:	서명(또는 기명날인)	
	수령자 주소:		
	전화 / 휴대폰: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가맹사업자 보관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세지푸드』의 『르번미(Lebunmie)』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아래사항을 보고 동일하게 ‘자필’로 기재 바랍니다.

『(주)세지푸드』의 『르번미(Lebunmie)』 가맹계약에 앞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정보 공개 서 등록 번호 :		
	정보 공개 서 최종 등록일 :	년 월 일	
	정보 공개 서 제공 일시 :	년 월 일 시	
	정보 공개 서 제공 장소 :		
	정보 공개 서 제공 자 :	서명(또는 기명날인)	
	정보 공개 서 수령 자 :	서명(또는 기명날인)	
	수령 자 주소 :		
	전화 / 휴대폰 :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 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 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구분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정히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자필 :

제공일자 년 월 일 시

수 령 자 성명 : 수령자 서명(또는 기명날인)

회 사 명 사명 : 회사 서명(또는 기명날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